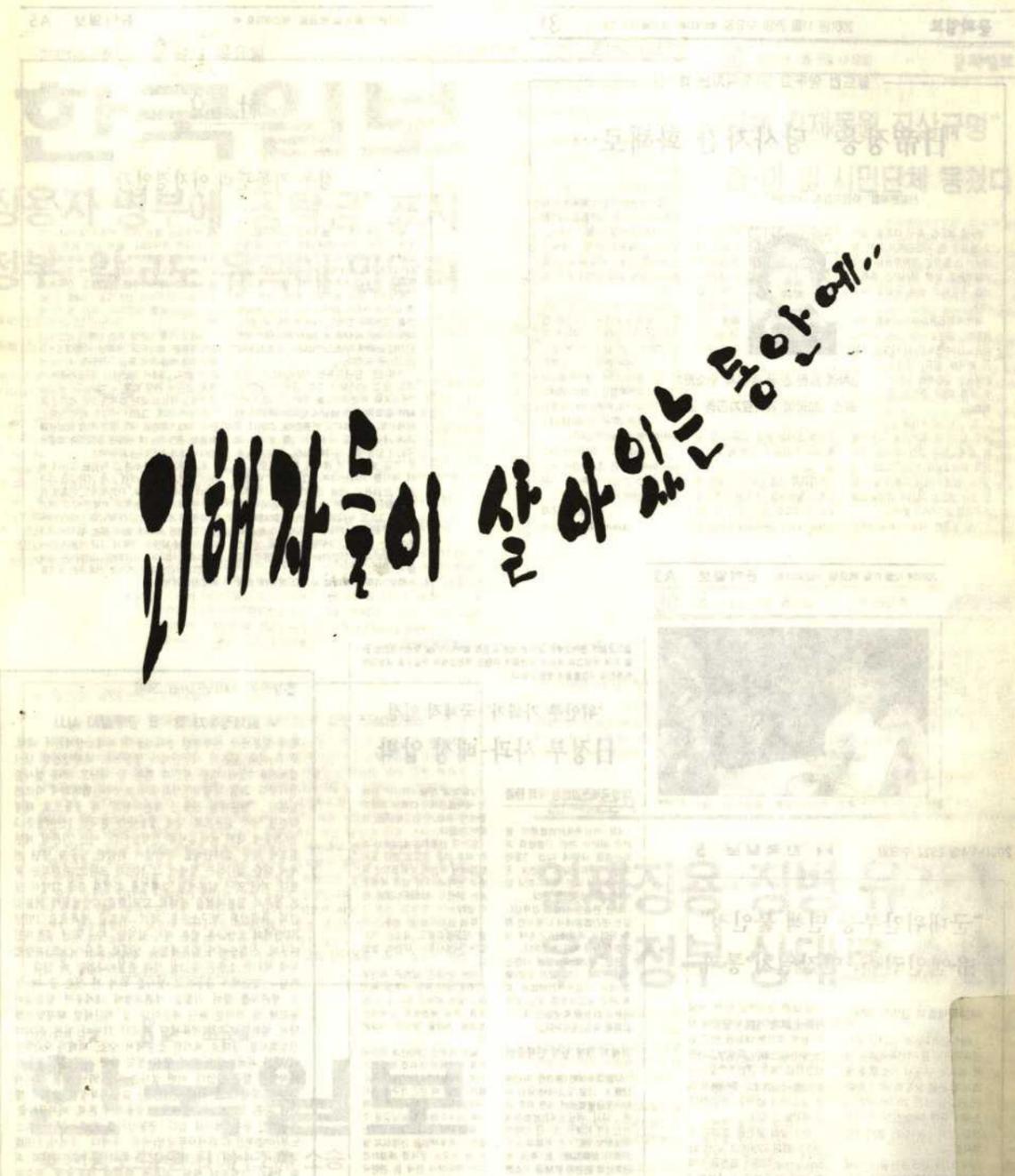


기사모음(III)

(VI)음모시적



침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2002

- 공 동 대 표 강 만 길 (상지대총장)
- 곽 동 협 (대구곽병원원장)
- 송 두 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 이 남 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130-86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38-29 금은빌딩 3층 민족문제연구소 내 | 전화 02-969-0226 | 전승 02-965-8879
E-mail : banmin@banmin.or.kr / http://www.banmin.or.kr 담당:우수미(woosumi97@hanmail.net, 019-328-5979)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한일민족문제학회, 나눔의집, 한국원폭피해자협회, 평화시민연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한국정신대연구소,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 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 3.1여성동지회, 원폭피해자와함께하는시민모임, 시베리아삭풍회, 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 독도수호대, 백범정신실천계연합,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 과소비추방범국민운동본부, 한국청년연합(접촉중), 홍익청년연합

인권정보자료실
CPb1.82

일제강제동원진상규명 “특별법”의 시급성

지난 20세기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경우는 더욱 그러합니다. 일제의 강점과 이를 이은 한국전쟁, 그리고 남북의 휴전상태로 지난 1세기는 그야말로 전쟁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를 제외한 전 세계가 냉전을 극복하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어 가는데도 우리 민족은 아직도 냉전구조를 해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해 교과서왜곡파동에서 보듯 냉전후의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보편적 정의와 상식에 기초한 시민사회로 발전하여야 할 것임에도 자국중심의 국수주의가 부활하여 또 다른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는 약육강식의 질서가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흔히들 과거 일제강점하의 피해라고 하면 지난 일은 들추어서 무엇하느냐 과거를 잊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설정하여야 하지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는 않된다는 등 특히 올해는 한일국 민교류의 해이므로 불행한 과거사는 서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야말로 지난 해 일본의 역사교과서왜곡파동을 불러온 또 하나의 주요원인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에서 역사교과서왜곡파동을 초래한 극우들은 한국의 정신대할머니들은 자의에 의해 전쟁터에 가 돈을 번 위안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한국의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듯 강제로 끌려가 피해를 보았다면 그 증거를 대어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티브이에서 이러한 극우의 논리는 피해자들의 기억의 불완전성을 먹이삼아 치밀한 논리구조하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정신대피해를 가장 심하게 겪은 한국에서조차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외에 무엇이 있느냐고 일본의 시민들에게 큰소리를 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리가 대부분의 선량한 일본시민들을 오염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 이러한 준비된 왜곡논리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상황입니다.

해방후 가장 우선되어야 할 피해조사가 한국전쟁과 냉전과정속에서 현재까지 방치되어 도대체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강제동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고 피해규모를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고 특히 현재 북한과 일본과의 수교과정에서도 이러한 피해를 규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우리 민족에게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해 10월 12일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법안 심의 및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자료집을 발간하며 조속한 법제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끝나지않은일제와의전쟁) 성명서

우리는,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 조직위원회 추천 패널 「끝나지 않은 일제와의 전쟁(일제 말기 강제동원)」에서 진지하게 발표와 토론을 한 결과, 일제 강점기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청산하는 작업이 여전히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우리는,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다양한 사실들을 검토함으로써 그 강제동원이 한국인들에게 실로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그 피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한국인들의 삶에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이 당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의 담합으로 일제 강점 청산 문제를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았으며, 그 왜곡이 아직도 한국인 피해자들을 옥죄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 왜곡'을 불러일으키는 등 한일간의 진정한 우호관계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현재 한국과 미국에서 진행 중인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소송이 피해자들의 생전에 그들의 '지체된 정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기회이며, 이 기회를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와 국회가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는, 일제 강점의 청산이라는 과제가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법조계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역사적 나태'로 인해 지금 이 순간까지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서 남아 있다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학자·법률가·사회운동가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이 지금이라도 발벗고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우리는, 고령의 피해자들이 가슴속에 한을 품은 채 해마다 타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전면적인 노력이 기울여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촉구하는 바이다.

1. 한국 정부와 국회는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에 의해 한국인 개인이 일본 및 일본인에 대해 가지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2.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제의 강점과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기구를 설치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3.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제의 강점에 관한 일체의 자료와 한일기본조약 및 청구권협정에 관한 일체의 자료를 공개하는 조치를 즉각 취하라.
4. 한국 정부와 국회는 일제의 지배가 불법강점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협정을 개정 또는 재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
5. 한국의 학계와 법조계는 일제 강점의 청산을 위한 학문적·실천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라.

2001. 5. 26.

「끝나지 않은 일제와의 전쟁(일제 말기 강제동원)」 참가자 일동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경과보고>

- 2000년 9월 :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4개 단체가 '일제강점기동원진상규명을위한모임' 발족
- 2001년 2월 14일 : 美國강제징용·위안부소송추진위원회와 전후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제1차 워크숍을 가짐
- 2001년 4월 24일 : 나라와민화를생각하는의원모임과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입법공청회 개최
- 2001년 5월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로 조직정비
- 2001년 5월 26일 : 진상규명모임 주도로 제44회 전국역사학대회에서 최초로 강제동원 문제의 종합적 규명을 위한 '끝나지 않은 일제와의 전쟁'이라는 학술토론회 개최
- 2001년 7월 3일 : 제2차 워크숍 개최 / 특별법안 최종 손질
- 2001년 9월 26일 : 제3차 워크숍 개최 / 조사·수집작업을 위해 '조사연구반' 가동 /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로 확대개편 결정
- 2001년 10월 12일 :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안 발의 (발의의원69명)
- 2001년 11월 7일 : 일제강점기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1차준비모임
- 2001년 11월~12월 : 독립기념관과 서울과 지방에서 구술자료수집작업 진행 (연구자10명)
- 2001년 11월 13일 : 결성대표자회의 준비회의
- 2001년 12월 11일 : 결성대표자회의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발족 (대표:강만길-상지대총장, 광동협-대구 광병원원장, 송두환-민변대표, 이남순-한국노동위원장) 현재30개단체
- 2001년 12월 19일 : 11월 서울과 지방에서의 구술조사작업을 바탕으로 헌정기념관에서 "구술자료로 복원하는 강제연행의 역사"라는 제목의 심포지엄 개최
- 2002년 1월 7일 : 행정자치위원회 여야간사(원유철, 민봉기) 의원실 방문 / 특별법안건상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 2002년 1월 7일 : 제1차집행위원회 / 한미일연대공청회 및 한미일연대집회계획 / 피해자가 중심이 된 전국회의원서명운동돌입 / 종교·사회·방송계 등 주요인사 1000명 서명운동 돌입
- 2002년 1월 14일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소식지 "특별법추진속보" 창간호 발간
- 2002년 1월 17일 : 행사위 여야간사(원유철, 민봉기) 2차방문
- 2002년 1월 18일 : 전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위한 국회의원사무실 방문 - 서울14명 / 서울지역 1중대 결성 (중대장 : 박진부)
- 2002년 1월 21일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소식지 "특별법추진속보" 제2호 발간
- 2002년 1월 25일 : 전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위한 국회의원사무실 방문 - 서울12명 / 서울지역 2중대 결성 (중대장 : 이윤재)
- 2002년 1월 26일 : 대구광병원강당에서 대구지역 독립군 발족 준비대회(중대장 : 이용수)
- 2002년 1월 28일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소식지 "특별법추진속보" 제3호 발간
- 2002년 1월 30일 : 광주태평양희생자유족회 긴급 지부장 회의 - 적극적 행동 참여
- 2002년 1월 31일 : 독립군참모장 구성 - 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위원회 전재진 회장
- 2002년 2월 1일 : 전 국회의원 서명운동을 위한 국회의원사무실 방문 - 서울23명 / 서울지역 1중대 2중대 행사위원들 방문
- 2002년 2월 4일 : 한미일연대공청회, 특별법제정독립군발대식, 한미일연대집회
- 2002년 2월 7일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소식지 "특별법추진속보" 제4호 발간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결성취지 및 구성>

◆ 결성취지 ◆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는 일제하 조선인 강제동원피해에 대한 국가적 진상규명을 통하여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는 한편,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하여 일본군국주의의 부활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김원웅의원을 비롯한 60여명의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를 실질적인 법률제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 2000년 8월부터 비상설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역사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의 6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상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를 토대로 30개 시민·사회·노동·연구·피해자 단체가 협력하여 일제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운동을 전국민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의 활동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구 성 ◆

- 1) 공 동 대 표 : 강만길(상지대총장)/광동협(대구광병원원장)/송두환(민변대표)/이남순(한국노동위원장)
- 2) 고 문 : 윤정옥(정대협前대표)/이만열(숙명여대교수)/전기호(경희대교수)/조동걸(국민대명예교수)
- 3) 공동집행위원장 : 이정식(한국노동대의협력본부장)/최봉태(변호사)
- 4) 집 행 단 체 : 연구단체(4개):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민족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소,한일민족문제학회/피해자단체(5개):나눔의집,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한국원폭피해자협회,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시민단체(3개):3.1여성동지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 5) 상 설 기 구 : 조사연구실:한일민족문제학회/대외협력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법률실:민변
- 6) 사 무 국 : 사무국장:김은식(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사무간사:우수미(민족문제연구소)
- 7) 가 입 단 체 : 민족문제연구소,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역사문제연구소,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과소비추방국민운동본부,나눔의집,독도수호대,독립기념관,민주노동조합총연맹,백범정신실천거레연합,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3.1여성동지회,시베리아사포회,우리역사바로알기시민연대,우키시마호폭침진상규명회,우키시마호폭침피해자배상추진위원회,원폭피해자와함께하는시민모임,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태평양전쟁한국인희생자유족회,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평화시민연대,한국원폭피해자협회,한국정신대연구소,한국청년연합(접촉중),한일민족문제학회,홍익청년연합

◆ 활 동 ◆

- 조사협력실을 통한 조사, 대외협력실을 통한 한미일연대, 법률실을 통한 법률제정·검토·소송
- 안건상정 및 통과를 위한 행정자치위원회위원, 전문위원, 여야당대표 방문활동
- 한미일연대집회 및 공청회를 통한 입법청원활동
- 1월內 국내주요인사 1000명 서명운동 전개(전 국회의원 서명포함)
- 대정부, 청와대, 여야당대표 앞으로 탄원서제출
- 소식지 및 자료집 발간사업 등 법률통과를 위한 다양한 활동전개

대한민국 국회는 1965년 일본과의 국교정상화 당시 일제 강점기 한국인이 겪은 시련과 청구권 문제를 의제로 논의한 이후 지금까지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에 대하여 제대로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국회에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문제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진상규명을 위하여 전쟁피해조사회법(일명 항구평화조사국설치법안-국립국회도서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나치전범기록 관계부처합동조사단(Interagency Working Group)이 나치 전범자료 조사가 일단락 됨에 따라 작년 5월 일본 전범기록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의회차원에서는 일본제국군관련 모든 정보의 공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100여명의 연방공무원을 자료 소재 파악과 문서비밀취급 해제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 1999년말 100억마르크의 기금을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안에 합의한 독일에서는 현재 생존하고 있는 강제노동피해자가 년 10%씩 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의 수급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조사작업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일본의 재판소에는 약 60여건의 보상청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서도 1999년 이래 일본 정부 및 기업을 상대로 국내의 관계자들의 징용 및 위안부 소송 등이 제기되어 이미 50여건에 이르고 있는 현실이다.

일제강점하 국외로 동원된 피해자가 150만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국내징용 피해자 역시 600만 명에 이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피해의 심각성과 국내외적인 노력에 비하여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제까지 일제의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우리 국민이 입은 피해의 실태, 피해자가 처해있는 현재의 상황, 그리고 전쟁에 의해 동원되어 지금까지 해외에 잔류하고 있는 위안부를 비롯한 한국인 피해자들의 현황조차 조사한 바가 없다. 또한 해외에서 희생된 희생자의 유골들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 있고 왜 국내로 송환조차 되고 있지 못한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망해 보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끊임없이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공식참배를 통해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공식화시키기 위한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자행한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겪어야 했던 우리민족의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게 한 우리 스스로의 책임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침해받은 인권을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해 온 시민단체와 연구단체들이 연대하여, 일제강점기 우리국민이 겪어야 했던 생명, 신체, 재산상의 모든 피해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 우리는 여야, 보수와 진보, 신구세대를 넘어서 이 법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하루빨리 심의·의결되어 역사의 진실이 규명되고 정의가 이땅에 실현되길 바란다.

2001. 10. 12

법안 공동발의자 김원웅 외 68명 의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역사왜곡 시정 없는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규탄한다
- 말뿐인 사죄 필요 없다, 법적인 책임 이행하라!

10월 15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은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한다. 한국정부는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정부가 '두고두고 후회하도록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하였다.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에 대해 대일 문화개방을 거부하고 군사협력을 중단하는 등 다양한 대응조치까지 취하였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두 달도 못되어 아무런 명분과 실리도 없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일본정부는 지금까지 교과서 역사왜곡 사건, 야스쿠니 신사 공식참배 등 아시아 피해국의 반대를 무시한 채 오만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이 일어나자, 이를 최대한 이용하여 자위대를 해외에 파병하는 등 군사대국화를 실현하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우리는 교과서 역사왜곡조차 제대로 처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꼭 10월에 방한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월드컵 공동개최문제, 북한문제, 한일문화교류 등이 두 나라 정상이 만나야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의문이다. 방한하는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에 버금가는 '사죄'를 한다고 해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교과서 역사왜곡이 시정되었는가? 일본은 그동안 말뿐인 사죄, 책임이행이 뒤따르지 않는 립서비스를 되풀이 해 왔다. 한국의 역대 정부는 일본의 형식적인 사죄만을 받아들여 일본의 우리 민족에 대한 과거사에 면죄부를 주어 왔다.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국민이 노력하면 21세기 동아시아의 밝은 미래를 여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정부가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나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 일본정부는 우리 정부의 35개조 수정 요구를 전면적으로 받아들이고 역사왜곡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국 국민에게 해야 한다. 우리는 이것만이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관계를 풀 수 있는 열쇠이며, 한국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 한일관계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과거사와 관련된 일본정부의 구체적인 성의 있는 조치이다. 그 조치란 일제강점하에서 비인간적인 피해를 강요받았던 한국 국민과 피해당사자에게 반드시 납득할만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방한은 결과 속이 다른 일본 정치인의 본성적인 술수이며, 여기에 한국정부가 호응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테러사건을 명분으로 한일 두 나라 사이에 과거사 문제를 어물쩍 넘어갈 소지가 있는 양국 정상 회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역사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
2. 일본정부는 일제하 식민지 시대 피해사실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고 전쟁피해조사회법의 제정을 하루빨리 시행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
3.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법을 하루빨리 제정할 것
4. 일본정부는 징병·징용피해자들에 대한 미불금 상환 등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하루빨리 할 것
5. 일본정부는 피해자를 능멸하는 야스쿠니 신사참배에 대해 사죄하고, 하루빨리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한국인 위패를 반환할 것
6. 일본정부는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망령을 벗어버리고 동아시아의 평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

2001. 10. 12

(국회연구단체)나라와 문화를 생각하는 의원모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제정추진위원회

1) 일본 강제연행·기업책임추급재판전국네트워크 대표 永村誠朗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을 한국국회에 발의한 것에 대해 충심으로 경의와 환영을 뜻을 표합니다. 1998년 한국의 김대중대통령이 방일했을 때 일본정부는 '일한공동선언'을 발표하고 그 가운데서 과거의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오부치정권을 계승한 모리 전수상은 '신의 나라' 발언 등을 되풀이하고, 현 고이즈미정권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침략전쟁을 찬미하는 역사교과서를 검정합격시키는 한편 8월 13일 야스쿠니신사참배를 강행하였습니다. 또한 전후보상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거부 의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련의 움직임을 보면, 일본정부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침략전쟁에 대해 진실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의 역사를 직시하여 항구적인 평화와 아시아 각국 민중과의 우호·공생 관계를 쌓기 위해 역사의 사실과 진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회도서관법개정안'(항구평화조사회법안)이 책정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 법안을 성립시키는 것이 과제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피해국민 한국에서 같은 취지의 법안이 만들어져 국회의 심의에 부쳐지게 된다는 것은 큰 의의를 갖습니다. 우리들은 한국에서 '진상규명특별법' 제정 운동과 연대하여 '국회도서관법 개정안'을 만들 것을 약속하며, 동시에 강제연행 피해자에 대한 보상 실현을 위해 더욱 분투할 것을 밝힙니다.

2) 일본 전후보상네트워크 대표 아리미즈 켄

금번 한국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니 대단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의 법안은 이미 미국에서도 작년에 성립되었고, 일본이나 필리핀에서도 제출된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법안이 가결되어 책임 있는 진상규명과 위령사업이 구체적으로 개시되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또한 이러한 진상조사에 의해 향후 명확해진 피해자유족에 대해 일본정부에 의한 사죄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과 2국간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일본정부의 주장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도 한국국회에서 일본에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결의가 추진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노력과 협력도 병행해 나갈 것을 부탁드립니다.

3) 재미 일본군위안부·정용 정의회복 위원회 정인진위원장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지지하며 -
반세기 동안 역사의 뒤안길에 묻혀있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특별법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지지합니다. 1999년부터 미국법정에서 일제하 강제징용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의 인권회복을 위해 뛰고 있는 저희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철저한 무관심 속에 소송물 원초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는 일본을 상대로 싸워왔습니다. 피해자들이 하루가 다르게 유명을 달리하고 있는데도 피해의 실태와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은 암담한 조국의 현실 하에 과연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강제동원 진상규명에 관한 실천적 의지가 있는 것인지 슬한 좌절감을 느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상규명 특별법이 발의되는 이 시점에서 국내에서 또한 해외에서 피해자들의 인권회복과 역사적 정의 회복을 위해 뛰고 있는 우리 모두는 600만에서 700만으로 추산되는 일제하 강제동원피해의 역사를 청산, 극복하려는 국회의 능동적인 노력에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겁니다. 피해자들이 고통의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가난과 한을 대물림하고 있는 인권수탈의 역사가 이 땅에서 되풀이 되도록 방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일본으로부터 정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인권을 회복함으로써 역사적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서는 빼앗긴 역사를 진정으로 찾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족의 시련과 한의 역사를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 청산, 극복하려는 주체적인 노력 없이는 역사적 진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는 일본의 음모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동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진상규명 기구가 실질적 활동을 벌일 수 있는 그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한의 상처가 치유되고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의 반석인 설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국회의원께서 역사적 책임을 통감하며 특별법 제정에 동참해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 제안이유 ◆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일제의 군인, 군속, 노무, 군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정확한 피해조사나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이 미비하였기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 일제강점하 강제동원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인권회복과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골자 ◆

- 가.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라 함은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을 전후하여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강제 동원되어 입은 피해를 말함(안 제2조).
- 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둠(안 제3조).
- 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함(안 제4조).
- 라.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에 희생자와 그 유족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관련 피해신고를 접수받기 위한 신고처를 설치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함(안 제13조).
- 마.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진상조사를 완료하여야 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2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상조사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21조).
- 바.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위령제례 등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령묘역조성·위령탑건립·사료관건립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로 인하여 호적등계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 아. 정당한 이유없이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와 실지조사의 거부·방해·기피한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33조).

◆ 발 의 자 ◆

김원웅·김홍신·안영근·오세훈·정인봉·김희선·장영달·이창복·김영춘·이부영·박재욱·장성민·서상섭·안상수·김근태·심규철·김용학·이미경·원희룡·심재권·조정무·송영길·이재정·김태홍·김경천·조용규·정범구·정병국·엄호성·김성호·김성순·주진우·김영환·곽치영·윤경식·윤두환·이근진·이주영·이인기·김민석·김영진·정장선·송훈석·김충조·박명환·윤여준·김화중·정대철·박양수·송석찬·남경필·이종걸·김호일·이호용·임종석·배기선·설 훈·이방호·김부겸·하순봉·장성원·김옥두·유재건·정형근·김덕룡·추미애·박주선·이강래·유성근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I)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의 진실을 밝히고 평화 증진을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된 군인·군속·노무자·군 위안부 등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 ② "희생자"라 함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후유 장애가 남아있는 자로서 제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 ③ "유족"이라 함은 희생자의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직계 존·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①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의한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유골 발굴 및 수습에 관한 사항
 4.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5. 사료관, 위령공간조성에 관한 사항
 6.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 대한 국가의 입장표명, 정책수립 등에 관한 건의사항
 7.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8. 기타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위원장은 정부직으로 보고하고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권위상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후임으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견(이법시행에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③ 제2항 중 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결석 사유)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로 등록된 자

제8조(의결절차)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의 설치)

-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 ④ 소속 직원중 5급 이상 공무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6급 이하 공무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⑤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의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칙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입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의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도지사 소속 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진상조사의 신청 및 피해신고)

- ① 희생자 또는 희생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나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자는 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하거나 피해신고를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상조사 신청을 위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처를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에 체재하거나 거주하는 자를 위하여 재외공관에도 신고처를 둔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수없는 특별한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3. 위원회가 진상조사개시결정을 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피해 신고를 받을수 있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와 특별한 사실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청의 각하)

-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
 1. 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의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중건의 신청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그 신청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제15조(진상조사의 개시)

- ① 위원회는 진상조사의 신청이 제14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각하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사개시 결정을 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필요한조사를 할수 있다.

제16조(진상조사 방법)

-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2.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3. 희생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관계기관·관계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계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가 발생한 장소 등에 대한 실지조사
 5.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요청
 6.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7.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8. 관계기관 또는 단체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당해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 등에게 보여야 한다.
 10. 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자에 대하여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11.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장은 대상자의 성명·주거·동행명령을 하는 이유·동행할 장소·발부연월일·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처벌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상·체적 그 밖의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수있다.
 12.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13.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14. 교도소 또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군 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중인 대상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의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15.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의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16.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요구를 받은 관계기관 등의 장은 그 자료가 외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일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와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17. 위원회는 직접 또는 관계기관을 통하여 외국에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자료에 관하여 해당 국가의 정부에 대하여 그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국가의 주재공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II)

제17조(조사의 범위)

- ①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일제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조사뿐만 아니라 관계기관이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였는지에 관하여도 조사할수있다.
- ②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회적·역사적 상황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다.

제18조(조사의 기간)

- ① 위원회는 최초의 진상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2년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 만료 3월 전에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위 기간 연장은 2회를 넘을 수 없다.

제19조(결정)

- ① 위원회는 당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인자 여부
 2. 당해 피해의 원인·배경
 3. 희생자 및 유족
- ② 위원회는 진향의 결정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결정을 한 후, 필요할 경우 피해 진상 등에 대하여 공표하거나 대통령령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20조(위원 등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 ② 누구든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다는이유로 해고·징계·감봉·진보등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 ③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련된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위원회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거나 증거·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지원 또는 보상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 ① 위원회는 제18조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월 이내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한다.
- ② 제1항의보고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과 피해자의 피해 상황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발생원인
 3.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지 못한 원인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유족 그 밖의 관계자 및 국가의 책임
 5.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희생자와 그 유족, 관련 민간단체의 노력의 내용과 그로 인한 성과 및 피해
 6. 진상조사결과와 진상이 밝혀지지 아니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의 내용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원인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③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권고를 포함하여야 한다.
 1.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와 그 유족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2. 조사결과와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와 그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해야 할 조치
 3. 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조사결과와 얻은 자료 등의 처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책임 면제)

- ① 위원회, 위원, 직원 및 위원회의 위촉 또는 위임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감정인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작성·공개된 보고서 또는 공표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② 제23조(위령사업) 정부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희생자를 위령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위령사업)

- ① 위령공간(위령묘역, 위령탑, 위령공원)조성
- ②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 건립
- ③ 그 밖의 위령 관련 사업

제24조(역사기록재단설립)

- ① 정부는 위령공간,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 등을 위한 독립기구로서 재단법인의 역사기록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충분한 기금을 출연한다.
- ② 제1항은 다른 형태의 기금 출연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 ③ 역사기록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담당한다.
 1. 위령공간의 운영·관리
 2.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사료관 및 박물관의 운영·관리
 3. 추가진상조사사업의 지원
 4.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관련 문화·학술 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업
- ④ 역사기록재단의 독립성은 보장되며, 정부는 재단 출연시 출연하는 이외에 역사기록재단에 대한 감독권한을 갖는다.

제25조(호적등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로 인하여 호적등제가 누락되거나 호적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호적에 등재하거나 호적의 기재를 정정할수있다.

제26조(비밀준수의무)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 위원회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사람, 위원회의 위촉에 의하여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불이익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여 위원회에 한 신청·신고·진술·자료제출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8조(위원회와 다른 기관의 협력)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의 내용과 절차 및 결과에 관하여 민간단체의 자문 및 의견을 구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 중 일부를 특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나 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위원회와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의 관계자나 전문가는 그 업무의 범위내에서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29조(공무원 등의 파견)

- ①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을 위원회에 파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기관으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공무원 또는 직원을 파견한 관계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하여 인사 및 지위에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 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동일시 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②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에 대하여 그 업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저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
- ③ 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촉받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감정인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①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자
- ② 위원회의 조사대상이 되는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거짓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
- ③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준수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

제33조(과태료)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진술서제출요구,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를 거부·기피한 자
 4.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의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위원회 규칙의 제정·공포, 위원회의 설립준비는 시행일 이전에 할 수 있다.
- ② (위원의 임기 개시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본다.
- ③ (대통령령의 제정) 위원장은 이 법 시행일 전이라도 국무총리에게 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